

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구미과학관 관람료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
해소 및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 만들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, 기타
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다자녀 감면근거 마련(안 제8조)

나. 기타 조문 정비(안 제4조 및 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,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0:00부터 18:00”을 “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람시간 종료”를 “관람종료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관람료 면제)”를 “(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”으로, “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”를 “관람료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관람료의 10분의50을 감경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<u>10:00부터 18:00</u> 까지로 한다.	제4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 ----- <u>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</u> ----
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<u>관람시간 종료</u> 1시간 전까지 한다.	② ----- <u>관람종료</u> -----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<u>관람료 면제</u>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<u>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</u> <u>관람료</u>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제8조(<u>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</u>) ① <u>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-- 관람료</u> ----- ----- 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<u>관람료의 100분의50을 감경한다.</u>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구정책”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·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수립·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.
 - 가.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
 - 나. 일자리·문화·교육·복지·주택·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
 - 다.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구미시장은 지역의 사회적·경제적 실적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인구정책사업)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
2. 일·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
3.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
4. 노인의 여가·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지 영 목
	담 당	박 노 돈
	담 당 자	김 수 진 (480-6163)